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미문화원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구미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를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구미문화원의 지원·육성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미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의 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구미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미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3조 중 “구미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구미문화원장”을 “구미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구미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미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업보조금의 용도)”를 “(사업보조금)”으로 하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미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구미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7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운영보조금의 용도)”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미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미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미문화원장”을 “문화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미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미문화원장”을 “문화원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구미문화원장”을 “문화원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구미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구미문화원의 지원·육성에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구미문화원"이란 구미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1. "구미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의 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구미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 ----- 문화원 ----- ----- ----- --.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	3. -----

에 따라 <u>구미문화원</u>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 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u>문화원</u> ----- -----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시 장"이라 한다)은 <u>구미문화원</u> 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 ----- ----- <u>문화원</u> ----- ----- -----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u>구미문화</u> <u>원장</u> 은 구미시의 지역문화를 진 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 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 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 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 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u>구미문화</u> <u>원장</u> (이하 " <u>문화원장</u> "이라 한 다) ----- ----- ----- ----- -----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u>구미</u> <u>문화원</u> 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 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u>문화</u> <u>원</u> ----- ----- -----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u>구미문화원</u> 에 대 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 ----- <u>문화원</u> ----- ----- -----.

② (생 략)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
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구미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
· 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
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
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
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보조금) -----

----- 문화원 --
-----.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
다)의 발굴·수집·조사·연
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
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
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 활성
화를 위한 사업 및 구미시장
이 위탁하는 사업

<삭 제>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생략)	제8조(운영보조금)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구미시장은 구미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① ----- --- 문화원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미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문화원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구미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 문화원장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구미문화원이 관리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 ----- 문화원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구미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 -----

기금운용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구미시장은 <u>구미문화원장</u>의 요청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그 사업 수행에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u>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u>」를 준용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 ----- <u>문화원장</u> ----- ----- ----- -----. 제18조(준용) ----- ----- ----- 「<u>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
--	--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시행일 2011.10.22]]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1.10.22]]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①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1.10.22]]

⑥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⑦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 7. 21>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19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7., 2012.2.17., 2014.1.21., 2015.5.18.>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소관 실·과		문화관광담당관실
입 안 자	과 장	김 구 연
	담 당	이 연 희
	담 당 자	이 미 화 (480-6603)